

의안번호	제 941 호
의결	년 월 일
연월일	(제 회)

## 충청북도의회 직무대리 규칙안

제안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21년 12월 15일

## 충청북도의회 직무대리 규칙안

의안 번호	941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1년 12월 15일  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# 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('22.1.13.시행)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
-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권한 범위와 책임 등을 명백히 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직무대리 순서 명확화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조~제3조)
  - 의장 : 부의장
  - 의회사무처장 :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관
  - 담당관·전문위원 : 직제상 차하급자
- 권한에 대한 책임(안 제4조)
  - 대리자는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짐

### 3. 규칙안전문 :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규칙안예고 : 해당없음
- 관련부서협의 : 해당없음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의회 직무대리 규칙안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법정대리)** 충청북도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.)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, 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1. 의장 : 부의장
2. 의회사무처장 :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관
3. 담당관·전문위원 :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

**제3조(지정대리)**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.

② 담당관·전문위원의 소속 직원이 결원, 출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·전문위원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.

③ 제1항,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사발령 등으로 대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 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다.

**제4조(책임)**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

직 무 대 리 명 령 서

1. 피대리 직명 :

2. 대리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직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성명

3. 대리기간 :    년 월 일부터 ~    년 월 일까지

위와 같이 대리를 명함

년    월    일

직위, 성명

(서명)

## 관계법령

### 지방자치법

제51조(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)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.